

» 축산법령

이 0 또는 음의 값인 연도가 있는 경우 : 직전 10년간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한 순수익액. 이 경우 마리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의 값인 연도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구 분	연간 순수익액
① 직전 10년간 5개 이상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최근 5개 연도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의 평균
② 직전 10년간 4개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2개의 평균
③ 직전 10년간 3개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3개의 평균
④ 직전 10년간 2개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2개의 평균
⑤ 직전 10년간 1개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마리당 순수익액

3)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농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산출한 값을 마리당 순수익액으로 사용한다.

3. 어업등

가. 철거·폐기 면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중 철거·폐기한 면적

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출한 평년수익액을 신청인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시설의 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6.28]
[대통령령 제24258호, 2012.12.2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값싼 수입 농수산물에 국산으로 거짓 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김치류 중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양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등 주요 품목을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시키며, 음식점 수족관에 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에 포함된 고춧가루와 음식점의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안 제3조제2항 및 제5항)

1) 현재 김치류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배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두 가지 원료를 표시하도록 되

어 있어, 배합 비율이 낮지만 원가비중이 높고 소비자 관심이 많은 고춧가루가 원산지 표시대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2)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함께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현재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는 배추의 원산지와 함께 고춧가루의 원산지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국내 생산자 보호를 도모함.

나.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신설(안 제3조제5항)

- 1) 양(염소 등 산양 포함)고기와 족발 등 배달용 돼지고기는 수입·유통량이 많지만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국산으로 판매될 우려가 있으며, 최근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 등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대됨.
- 2) 양(염소 등 산양 포함)고기, 배달용 돼지고기, 명태(황태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및 갈치를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신설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고 주문할 수 있도록 함.

다.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명확화(안 제3조제5항)

- 1)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었으나, 음식점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가 불분명한 점이 있음.
- 2) 음식점 수족관에 보관 중인 살아있는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혼선을 방지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을 도모함.

마.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권한 조정 (안 제9조제1항)

- 1) 음식점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면서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의 단속인력이 절대 부족하여 음식점의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를 함께 할 필요가 있음.
- 2) 음식점에 대해서는 농산물과 수산물 구분 없이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권한을 함께 부여하되 위임되는 권한이 농림수산물식품부장의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되어 집행되도록 함.

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 신설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법제처 제공〉

【제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 서규용

» 축산법령

◎ 대통령령 제2425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 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 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
 -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

제3조제5항제2호 중 “판매·제공하는 것”을 “판매·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고기의 식육·포장

육·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 구이용, 탕용, 찜용, 육회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제3조제5항제6호(종전의 제5호) 중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배추김치”를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낙지”를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고등어, 갈치”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살아있는 수산물 :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것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리하여 판매·제공되는 음식 중의 농수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에게 공동으로 위임하되,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행사의 대상을 분리하여 권한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1)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2) 쇠고기의 원산지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4)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5)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6)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7)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8) 쌀(찐쌀을 포함한다)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9) 배추김치(배추김치에 들어있는 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한다)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10) 납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고등어, 갈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별 각 30만원	품목별 각 60만원	품목별 각 100만원
11)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다.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호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라.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마.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4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바.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5호	20만원	40만원	80만원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가목”을 “제2호가목 및 나목11)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한다.

별표 2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다목”을 “제2호다목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수산물(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

을 포함하며, 통신판매의 경우와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 축산법령

별표 2 제4호라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50만원	150만원	250만원
2)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25만원	100만원	150만원
3) 쇠고기 식육의 종류의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4)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5)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6) 오리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7) 양고기(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8) 쌀(찐쌀을 포함한다)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9) 배추김치(배추김치에 들어있는 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한다)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10) 넉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뽕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고등어, 갈치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품목별 각 15만원	품목별 각 30만원	품목별 각 50만원
11)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2호나목11) 및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김치류 중 고춧가루 사용 품목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가공되는 김치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이 영 시행 당시 보관 중인 배추김치나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 중인 배추김치 가공품을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그 원료인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5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만들어진 김치류 포장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된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의 포장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